

공 항 시 설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7.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공 항 시 설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2207117	박용갑 의원 등 13인	'25.01.0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 항 시 설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2207168	민형배 의원 등 13인	'25.01.0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 항 시 설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2207213	김예지 의원 등 12인	'25.01.0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 항 시 설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2207223	이해민 의원 등 14인	'25.01.06.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 항 시 설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2207429	박용갑 의원 등 11인	'25.01.1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94	김예지 의원 등 13인	'25.02.05.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96	조지연 의원 등 13인	'25.02.10.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02	진종오 의원 등 11인	'25.02.13.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4.11.)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72	이춘석 의원 등 12인	'25.02.2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4.11.)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84	이수진 의원 등 10인	'25.02.2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4.11.)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35	송석준 의원 등 14인	'25.02.2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4.11.)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22	문진석 의원 등 12인	'25.04.11.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4.11.)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72	윤재옥 의원 등 10인	'25.04.17.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7.10.)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032	권향엽 의원 등 10인	'25.04.23.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7.10.)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335	김희정 의원 등 11인	'25.07.0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7.10.)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7.16.)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7. 21.)는 위 1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그러한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그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을 공항시설의 정의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나.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공항개발사업 시행 또는 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향입법하고, 활주로 근처(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구역)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년 내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부칙 제2조).

라. 공항운영자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성평가 수행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5, 제31조의7 및 제31조의10 신설).

마.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6).

바. 국토교통부와 각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의8 및 제31조의9).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을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4 신설).

아.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제21조제3항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설치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착륙대의 종단 이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및 그와 연접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할 것
4.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착륙대·유도로,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시설설치기준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서 정한 바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물체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의5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 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방기본계획은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전담인력·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의 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1조의6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석 및 제31조의7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항공기와 조류·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 예방방법 개발 및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장비의 운용 검토
3.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4.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점검 및 활용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①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매수 가격 산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조(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나. (생략) <u><신설></u> 8. ~ 20. (생략) 제21조(투자허가·시설물의 귀속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u>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u> 8. ~ 20. (현행과 같음) 제21조(투자허가·시설물의 귀속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인천국제공항공사법</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

-----설치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1. 공항 또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

<신 설>

<신 설>

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제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제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착륙대의 종단 이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및 그와 연접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할 것
4.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착륙대·유도로,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 설>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시설설치기준이 「국제민간 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바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물체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 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방기본계획은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의 시

<신 설>

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8(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
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
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
사업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제31조의6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

<신 설>

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석 및 제31조의7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항공기와 조류·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 예방방법 개

<신 설>

발 및 제31조의5제1항에 따
른 전담인력·장비의 운용
검토

3.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
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4.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점검 및
활용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
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
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
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
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
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성 평
가) ①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
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

<신 설>

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② ~ ⑥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매수가격 산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	---